

[사 건 명] 행심 2019 - 3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8. 11. 27. 청구인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한 심의결과에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11. 30.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9. 2.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3월부터 피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하여 담임교사와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주의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나 달라지지 않았다.

나. 이에 청구인측은 학교폭력으로 불안하고 힘든 생활을 하였고, 청구인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인 또한 가해학생이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하다.

다. 청구인 및 담임교사, 같은 반 학우 등에게 확인을 했다면 이러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며, ‘서면사과’ 조치로 졸업 때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술서와 담임교사의 확인서, 그리고 상대학생의 진술을 종합하여 조치하였으며,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놀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놀렸다는 점은 청구인 학생 확인서에 나타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를 보고 불안한 학교생활을 한 점을 참작하여 피해학생에게 더 많은 가해학생 조치인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상담 5시간 조치를 하였으며, 청구인도 피해학생을 때린 사실이 있고(담임의 견) 스스로 놀린 점도 인정(청구인 진술서)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의 최소 조치인 1호 ‘서면사과’ 조치를 하였다.

다. 담임교사는 2018.11.08. 있었던 일을 더 조사하기 위하여 반 학생들에게 다시 물어보았지만 목격학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학폭위에서는 학생 진술서, 담임소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와 학폭위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하고 종합적인 토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 및 피해학생의 각 학생확인서, 담임교사 의견서, 학폭위에서의 청구인 및 피해학생 측 각 진술,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2018. 3.경 학기 초부터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바보, 멍청이' 등으로 놀리고 청구인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청구인 보호자가 담임교사와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주의 및 재발방지를 수차 요구했고, 담임교사도 피해학생을 개별상담지도하고 반성문까지 쓰게 해서, 2학기 들어서는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괴롭히는 횟수가 줄었지만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괴롭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 2018. 11. 8. 4교시 후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바보, 멍청이' 라고 놀려서, 청구인이 '멍청이라고 한 사람이 멍청이래요' 라고 말하자,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복부 부위를 손으로 밀쳤고,

청구인은 이후 스트레스로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자, 2018. 11.

9. 청구인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사안 접수를 하였다.

- 전담기구 사안조사결과에 따라 ‘2018. 11. 8. 12시 55경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복부를 손으로 세계 밀쳤다’는 학교폭력으로 2018. 11. 23. 학폭위가 개최되게 되었고,

청구인과 보호자는 학폭위 개최통지서에 피해학생으로만 통지를 받고 2018. 11. 23. 학폭위에 참석해서 피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만 하고서 퇴장하였다.

- 이후 학폭위에서 진행 된 가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과정에,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청구인이 먼저 등을 쳤다, □□가 발로 맞았다’고 말하고, 피해학생도 ‘청구인이 등을 밀쳤다, 팔로 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등을 먼저 때렸다’는 학교폭력사안을 인정하고, 청구인도 가해학생으로 판단하고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 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위 학폭위 결정에 따라서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 대리인 구술심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서로 놀렸다’는 점은 처분사유가 아니고 ‘청구인이 피해학생 등을 쳤다’는 것이 처분사유였는데 이후 그 사실을 확인해보려 했지만 새로운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을 가해학생으로 인정하여 학폭위를 개최한 후 처분을 하려면, 학폭위 개최통지서에 ‘학폭위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 를 기재하고 직접 출석하여 가해 측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가해 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므로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통지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측에 가해행위 사안에 대한 적법한 통지절차가 없었고,

실제 학폭위에도 청구인과 보호자는 피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만 하고 퇴장하였을 뿐, 가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절차를 보장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처분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실제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 청구인에게 가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도 반성정도 등을 임의로 판단하는 등 점수산정에 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학폭위 과정에서 나온 상대학생 보호자와 상대학생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가해행위가 인정되었다고 보기에다 부족한 면이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개최통지서상 절차보장이 되지

않았고, 실제 학폭위에서도 피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만 하고서 퇴장시켰을 뿐, 가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절차보장을 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진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